

(M)SDS (Safety Data Sheets) SERVICE

SGS는 다양한 기타규제 물질들에 대한 분석서비스를 제공하여 늘어나는 환경규제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Global Free Pass, SGS Report**를 통해 세계를 무대로 Blue Ocean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ing of Chemicals.

국제적으로 통일된 분류기준에 따라 화학 물질의 유해, 위험성을 분류하고 통일된 형태의 경고표시 및 MSDS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작업장의 근로자, 소비자, 운송근로자 및 긴급방재요원(소방)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물리적 위험성 16분류, 인체 건강 유해성 10분류, 환경유해성 1분류 등 총 17분류로 구성됨

새로운 분류표지체계

GHS의 도입에 따라 EU의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와 관련한 Directive 67/548/EEC의 주요 수정안은 부속서 1의 내용이 대체됩니다. 새로운 분류 표지 체계가 도입이 됩니다

REACH (Regulation 1907/2006/EC)와 EU Regulation on Detergent (648/2004/EC)등의 주요한 Regulation은 CLP가 적용됩니다.

(M)SDS 작성대행 서비스

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는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량, 응급조치요령, 취급방법 등을 설명해 주는 자료로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물질안전보건자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 수입, 사용, 운반, 저장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화학물질의 명칭, 성분 및 함량량,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재한 MSDS를 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SGS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SDS 개발 및 기존 SDS를 GHS를 적용한 국내외 기준에 맞추어 작성 및 검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GHS 도입 및 REACH 연계

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란 화학물질 분류, 표시에 대한 세계 조화시스템으로 전세계적으로 통일된 형태의 경고표시 및 MSDS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2002년 UN 세계 지속가능개발 정상회의에서 화학물질에 대한 분류, 표시가 국제적으로 일치하지 않아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하였으며 각국에서는 화학물질의 분류표지에 대한 조화를 위하여 UN GHS 지침 시행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국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GHS에 적절히 대응해야 수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UN GHS의 국제적인 조화방안에 따라 EU의 기존 지침 (Directive 67/548/EEC, 1995/45/EC)와 EU REACH 규정 (Regulation 1907/2006/EC)을 개정하여 물질과 혼합물에 대한 분류 기준을 통일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EU REACH 대응 시에도 등록 서류와 MSDS의 내용을 일치시키고 REACH 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등 GHS를 고려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GHS 도입에 따른 변화들

MSDS를 올바르게 작성하려면 GHS지침에 의하여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 위험성 분류가 올바르게 되고, 표준화된 경고표지 등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기존의 MSDS는 전면적으로 수정 및 개정되어 관리되어야 합니다.

■ GHS 도입에 따른 주요 변경내용

- ✓ 유해 위험성 분류기준 통일
- ✓ 그림문자 및 경고표지 변경
- ✓ MSDS 항목의 순서 및 내용 변경
- ✓ 물질의 유해 위험정보 공유를 통한 중복시험 방지

기존	GHS 적용
	 급성독성
독성, 발암성, 생식독성, 변이원성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표적장기전신독성
	 급성독성
유해성, 자극성, 과민성	 자극성, 과민성
	 고압가스

SGS

CLP (EC 1272/2008, EU)

Classification, Labe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 and Mixture ('09.1.20 발표)

EU내 유통/수입되는 물질 및 혼합물을 대상으로 하는 분류, 표시, 포장 기준

기존의 Directive 67/548/EEC, Directive 1995/45/EC를 포괄하여 GHS를 적용함

• Directive 67/548/EEC (단일물질)

:2010.12.1부터 EC 1272/2008로 전환

• Directive 1995/45/EC (혼합물질)

:2015. 6.1부터 EC 1272/2008로 전환

화학물질 분류 절차

MSDS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GHS 기준에 의하여 물리적 위험성, 건강유해성, 환경유해성에 대해 각 물질별로 어떤 카테고리에 해당되는지를 기존의 독성 및 위험성 자료를 통하여 분류하고 MSDS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을 분류하는 데는 국내외 알려진 유해 위험성 정보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동물 및 환경보호를 위하여 동물을 이용한 독성시험 등은 최소화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GHS/MSDS 적용대상물질 확인

구성성분 및 함유량 확인

- 1 % 이상: 모두 적용,
- 발암성, 생식세포변이원성 물질: 0.1% 이상
- 호흡기과민성물질(가스): 0.2% 이상
- 생식독성물질 0.3% 이상

유해성 확인

신뢰성 있는 유해 위험성 분류자료 확보

GHS 분류

국가별 빌딩블럭 고려

MSDS 및 경고표지 작성

주요 국가별 GHS 도입

• EU GHS 도입

CLP 법령(Classification, Labe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 and Mixture) - EC 1272/2008

EU는 위험물질의 분류, 표시, 포장에 관한 법령을 개정함에 따라 모든 유해 위험성 화학물질 및 혼합물에 대해 분류, 표시 및 포장의 의무를 가짐.

단일물질은 2010년 12월 1일부터, 혼합물은 2015년 6월 1일부터 CLP 규정에 따라 분류, 표시 및 포장의 의무가 있음. 유예기간 동안에는 기존의 위험물질에 대한 분류 및 표시규정 (Directive 67/548/EEC, 1999/45/EC)와 혼용할 수 있음.

• 미국 GHS 도입

미국은 UN GHS의 3차 개정판을 적용하여 2013년 12월 1일까지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GHS 교육을 실시하며 2015년 6월 1일까지 단일물질 및 혼합물질을 포함한 모든 제조 및 수입제품에 대한 SDS 작성 및 경고표지 라벨을 변경해야 함.

• 중국 GHS 도입

화학물질의 안전표지에 대한 일반원칙 (GB 15258-2009), 화학물질 분류 및 유해성에 대한 일반원칙(GB 13690 - 2009),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에 대한 안전규정 (GB 20576~GB 20602-2006) 등에 따라 2011년 5월 1일부터 모든 화학물질에 대하여 GHS에 따른 분류, 표시 및 포장의무를 이행하고 SDS를 작성해야 함.

• 국내 GHS 도입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 (환경부), 위험물의 분류, 표지에 관한 기준 (소방방재청)에 따라 단일물질은 2010년 7월 1일부터, 혼합물질은 2013년 7월 1일부터 GHS 기준에 의한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MSDS를 작성 관리해야 함.

CONTACT

SGS Korea Co., Ltd. (Société Générale de Surveillance)
Laboratory Testing Services, E&E Chemicals Team

(431-08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55-9 디오밸리 322호

Phone : 031-460-8004, Mail : soyoun.shin@sgs.com

www.kr.sgs.com/ee
www.kr.sgs.com/rohs